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427
----------	-------

발의연월일 : 2026. 3. 12.

발 의 자 : 박민규 · 정태호 · 민병덕
윤준병 · 이주희 · 김남희
박정현 · 김동아 · 손 솔
이정문 · 민형배 · 이춘석
김용만 · 조승래 · 이재관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형 건설사 공사현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반복되는 등 중대재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으나, 산업 현장에서의 노동자 안전을 위한 노력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임. 중대재해 예방과 산업안전 강화를 위하여 산업재해에 책임이 있는 건설사에 대한 공공입찰 참가자격 박탈 등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음.

그러나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여 기회를 제한하는 현행 제도를 살펴 보면, 최근 5년간 산업재해가 발생한 건설사를 상대로 공공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사례가 전무하며, 실제 제재 처분을 받더라도 부정당업자가 책임을 회피하고 다른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사각지대가 존재함.

이에 개정안은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을 실효성 있게 강화함으로써 입찰 참여를 원하는 기업들이 반복적인 산업재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자발적으로 근로자 안전관리에 힘쓰도록 하려는 것임.

우선, 현행 「지방계약법」상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가 공공 발주 사업 내의 위반행위에만 국한되어 있는 만큼, 민자사업이나 민간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의 경우도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유에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가 판단하도록 하여 신속한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와 함께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입찰참가 자격을 최대 3년까지 제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다음으로 중대재해 등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업체가 명의이전·법인 분할 등을 통해 제재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1조 및 제31조의6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범위”를 “범위(다만, 제9호는 3년이내의 범위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9호를 제10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산업안전보건법」 제15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

제31조의5제1항 중 “아니한 자”를 “아니한 자(이하 “부정포탈업자”라 한다)”로 한다.

제31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6(부정당업자등 입찰 참가자격 제한 효과의 승계) ① 제31조제1항 또는 제31조의5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 또는 조세포탈업자(이하 이 조에서 “부정당업자등”이라 한다)가 받은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의 효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승계된다.

1. 부정당업자등이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
2. 법인인 부정당업자등이 합병하는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3. 법인인 부정당업자등이 분할되는 경우: 분할 후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 다만, 분할 후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이 그 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위를 한 종전의 영업 부분과 실질적인 동일성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부정당업자등이 폐업 후 본인, 그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직계혈족(이하 이 조에서 “친족등”이라 한다)이 같은 장소에서 종전에 폐업한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는 경우: 친족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양수인등”이라 한다)가 영업을 양수하거나 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될 때, 또는 영업을 등록·신고할 때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의 효과는 승계되지 아니한다.

③ 제31조제1항 또는 제31조의5제1항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았거나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양수인등에게 알려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정당업자등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3. 법인인 부정당업자등이 분할
되는 경우: 분할 후 존속하거
나 신설되는 법인. 다만, 분할
후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
이 그 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
위를 한 종전의 영업 부분과
실질적인 동일성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증명하는 때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부정당업자등이 폐업 후 본
인, 그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직계혈족(이하 이 조에서 “친
족등”이라 한다)이 같은 장소
에서 종전에 폐업한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는 경
우: 친족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양수인등”
이라 한다)가 영업을 양수하거
나 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될
때, 또는 영업을 등록·신고할
때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 사

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의 효과는 승계되지 아니한다.

③ 제31조제1항 또는 제31조의 5제1항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았거나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양수인등에게 알려야 한다.